



Ⅲ. 헌의안

● ○ ●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 현의안

(2024. 7. 29. 현재)

1. 헌법 개정 관련

가. 정년 관련

- 목사,장로의 정년을 73세로 연장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목사, 장로의 정년을 73세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
- 목사의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며 목회 및 노회활동은 보장하고 총회의 공직은 중지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목회자의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며 목회 및 노회활동은 유지하고 총회의 공직은 금지하는 조건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해 달라는 내용
- 목사, 장로, 집사의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되 만 70세 이후로는 목회 및 교회 봉사 외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지교회 항존직(목회자, 장로, 집사)의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며 정년일은 93회 총회결의에 준하도록 하며, 만70세 이후에는 목회 및 교회 봉사 외에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해 달라는 내용
- 목사, 장로 정년을 75세로 연장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신학교 정원 감축 및 교단 탈퇴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에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
- 목사, 장로, 집사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되 만 70세 이후로는 목회 및 교회 봉사 외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지교회 항존직(목회자, 장로, 집사)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며 정년일은 93회 총회결의에 준하도록 하며, 만70세 이후에는 목회 및 교회 봉사 외에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해 달라는 내용
- 위임목사의 정년을 75세로 하고 미조직교회(미자립교회, 개척교회)시무목사의 정년 폐지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헌법 정치 제3장 2조에서 항존직과 제4장 제4조에서 위임목사는 만 70세로 되어 있는 것을 75세로 변경하고 미조직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의 시무목사의 정년은 폐지해 달라는 내용
- 목사, 장로, 집사의 정년을 65세로 하향 및 만 70세에 완전 은퇴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고령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조정하여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정년을 하향 조정 해달라는 내용
- 정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선행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 정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헌법 개정을 해달라는 내용

나. 여성 사역자 관련

- 여성 사역자 안수 허락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선교와 목회의 사명을 남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되며 이미 양성평등을 교육받은 젊은이에게 여성안수 불허는 명백한 불평등이며 가부장적인 구약시대에도 여성 지도자(드보라, 미리암, 훌다)를 세우셨으며 신학시대에도 말씀의 사역자로(유니아, 뵤비, 브리스길라)세우셨기에 여성 사역자의 안수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
- 여성 사역자의 목사 안수 관련 총회 헌법 개정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여성 사역자를 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 후 안수하여 목사로 사역하게 하며 본 현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개정안은 규칙부가 24시간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회 임원회가 전국 노회에 수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제110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한 후 목사로 안수하여 사역하게 해달라는 내용
- 군목, 선교사 등 특별사역에 한해 여성 목사 안수 시행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목사와 장로 568명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합동총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의 설문조사 중

62.5%가 여성의 군목사역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5.5%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것에 따라 군목과 선교사에 한해서 안수해 달라는 내용

- 여성 사역자를 총회 강도사고시 통과 후 안수 없이 준목으로 사역하게 하기 위한 헌법 개정 요청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여성사역자에게 강도사고시 합격 후 목사안수는 불가한 강도사로서 강도의 자격만 부여하기 위해 정치 제23장 제1조에 따라 헌법 개정을 진행하며 총회임원회는 제110회 총회에 보고하여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

- 여성사역자들에게 안수는 불가한 강도사 인허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여성사역자에게 강도사고시 합격 후 목사안수는 불가한 강도사로서 강도의 자격만 부여하기 위해 정치 제23장 제1조에 따라 헌법 개정을 진행하며 총회임원회는 제110회 총회에 보고하여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

- 교단 내 여성의 지도력 개발과 활용을 위해 대책마련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교단차원에서 여성안수에 준하는 여성 지도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

다. 교회 신설립 관련

-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 중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되거나..]를 [12인 미만되거나..]로 조정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의 줄어드는 청장년으로 교회설립이 어려우니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의 요건을 12인으로 설립요건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

라. 당회 조직 관련

-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 중[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를 [세례교인 20인 이상을 요하고..]로 조정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에 청년인구 감소 및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폐당회가 되거나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의 세례교인 수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

2. 총회규칙 개정 관련

가. 임원회 임무 관련

- 현행 총회규칙 제24조(임원회) 3항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총회 임원회는 파회 후 하회에서 올라온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등의 제반 현안을 처리한다.]로 수정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2항에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성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정신에 의거하면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체계에 반한 규정이므로 총회 임원회가 직접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해 달라는 내용

나. 감사부 임무 관련

-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단, 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 감사자는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를 [수용하여야 하고,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과 회기 종료 후라도 선거법 위반자, 명백한 회계 부정이 있을 때 총회장의 지시로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선 처리(권징조례, 선거규정에 따른 시벌 등)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로 수정 요청 헌의의 건

다. 총회준비위원회 관련

- 총회준비위원회의 총회규칙 삽입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준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총회 규칙에 삽입하여 총회준비위원회가 혼란 없이 일하게 해달라는 내용



3. 총회결의 관련

가. 제주선교센터 건축 관련

- 제107회 총회 결의대로 제주선교센터 건축 시행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10억이상 모금과 제주선교센터건축 TFT를 결성하였으나 공사의 진척이 없기에 총회 결의대로 선교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내용
- 제주 신일교회 매각 및 제주선교센터 건축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주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전국교회에서 모금한 금액 8억과 신일교회 부지를 시세에 맞게 매각하여 제주선교센터를 건축해 달라는 내용

나. 사설 언론 관련

- 사설언론기관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사설언론기관 목회자 치리회 승인) 전면 취소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치리회 승인 없는 사설언론기관 설치 운영자 조사처리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한 내용은 헌법 제4장 제4조의 기관목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며, 사설언론은 국가에서 보장한 언론 자유와 상치함 또한 이중직 제한에 대하여는 총회장, 상비부 임원들, 특별위원들 등 총회 회의비 수령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사설언론 목회자에게만 이중직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제100회 총회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

다. 변호인 관련

- 총회 헌법을 위반한 제97회, 제105회 총회 결의(변호인 관련)취소 청원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97회 총회 결의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 27조를 위반하였고, 제105회 총회 결의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 76조의 내용과 무관하며 잘못 결의된 것이므로 결의를 취소 해달라는 내용

라. 주일 임직식 관련

- 교회 주일 행사는 예배모범대로 하되 위임, 임직, 은퇴식에 한하여 당회의 지도대로 시행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도들의 생활 양식이 주일 이외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위임에 배 및 임직예배, 은퇴식의 경우에 한해 주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

마. 임시당회장 투표권 관련

- 제103회 총회 결의 중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를 [가능하다]로 재론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3회 총회 결의 중 임시당회장이 목사 청빙 투표권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였는데, 가능하다고 재론해 달라는 내용

바. 시무목사 노회장 관련

- 시무목사가 총회총대를 제외하고 노회장이 될 수 있도록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시무목사가 총회총대는 될 수 없고 노회장으로 노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

4. 총회역사 관련

가. 사적지 지정 관련

- 경북지역 최초의 유치원 설립 및 신사참배 반대와 농우회사건을 겪은 의성교회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 헌의의 건
- 이래수 선생의 전도 서신을 통해 세워진 구이중앙교회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 헌의의 건

- 영수 유경선 씨와 성도의 헌금으로 세워진 중언교회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 헌의의 건
- 1906년 세워진 전주유상교회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 헌의의 건
- 조기남, 김윤철, 김두현(3인)이 순교한 금산교회를 순교자 기념교회로 지정 헌의의 건

나. 순교자 지정 관련

- 금산교회 조기남 전도사, 김윤철 집사, 김두현 집사의 총회 순교자 지정 헌의의 건

5.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헌법해석 관련

- 헌법 해석을 위한 15인 헌법위원회(상설) 구성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현재는 총무, 총회 임원회, 재판국, 선관위까지 헌법을 해석하며 총회의 권한을 침탈하여 총회를 혼란하게 하므로 당회기 총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3인-총회장, 총회서기, 총무), 순환직(12인-시무중인 증경총회장 2인, 증경부총회장 2인, 임원역임자 3인, 당회기 정치부장, 헌의부장, 재판국장, 규칙부장, 감사부장 각 1인), 자문위원(법학 전공자 1인)을 두어 헌법 해석을 위한 헌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

나. 신학 정체성 관련

- 총회의 개혁신학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회장, 총회서기, 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총장 3인, 지방신학교 학장 9인으로 구성된 신학위원회의 상설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

다. 기념사업 관련

- 복음전래 140주년, 주일학교 설립 70주년, 구개혁합동 2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2025년은 복음전래 140주년, 주일학교 설립 70주년, 구개혁합동 20주년, 광복 80주년이므로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며 행사추진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해 달라는 내용

라. 총회본부 구조조정 관련

- 총회본부 구조조정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본부의 직제개편과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증대, 인재 양성, 직무 기능화, 숙련과 효율성을 위해 총회본부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

마. 기독교신문 구조조정 관련

- 기독교신문 구조조정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기독교신문의 직제개편과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증대, 인재 양성, 직무 기능화, 숙련과 효율성을 위해 기독교신문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

바. 문화 사역 관련

- 총회 기독교문화 사역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
- 지역복음화 문화사역위원회 상설위원회로 설치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

사. 다문화 이주민사역 관련

- 다문화 이주민 사역관련 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최근 글로벌화로 인해 대한민국에 다양한 배경과 문화적 특성이 있는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법적 지원과 교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

아. 개척교회 설립추진 관련

- 경상북도청의 안동노회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신 도청지역 개척교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현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2018년 경상북도청이 대구광역시에서 안동시로 이전함에 따라 2027년까지 교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24.1.28. 총회장님과 감사예배를 드렸기에 총회 차원에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

6.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사회소송 관련

- 총회가 사회법에 대응할 때는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 후에 대응 현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고전 6:1-11절대로 먼저는 세상에 소송하는 것을 금하고 총회가 고소를 당했어도 성경적 원리에 의해 먼저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회소송에 대응해 달라는 내용

나. 대법원 판결 관련

- 총회 공직(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중 결의하거나 판결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당사자에게 총회의 공직을 3년간 보류하며 구상권 청구 현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총회 결의를 해왔으며 이후에 사법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서 총회가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총회는 교권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그 피해를 모두 노회나 지교회가 짊어지고 있기에 총회 재판국원이나 선관위처럼 총회의 공직에서 판결 혹은 결의한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패소한 경우 승소자가 당사자(재판국원, 선관위원)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고 총회는 공직을 3년간 보류하며 전국교회에 사과하는 성명서를 기독교회에 자비로 공고하도록 하며 해 결의는 절대 변경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

다. 소송비 반환 관련

- 총회가 결의를 잘못하여 사회 소송에서 총회가 패소했을 때 대상자에게 소송비 반환토록 현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가 결의를 잘못하여 사회법에 소송하는 일들이 늘고 있고 만일 사회법에서 총회가 결의를 잘못하여 패한다면 소송의 원인이 총회에 있기에 그들의 심적, 경제적 고통을 위로해 주기 위해 소송비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

라. 소송비 지원 관련

- 총회장 및 서기의 공직 기간에 피소된 사건의 소송비와 임기 종료 후에도 공직 기간 중 피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 현의 건

마.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관련

- 선관위 배정 예산 외 임의 집행분에 대하여는 공금횡령 죄에 속하므로 향후 상응한 조치 강구 및 사전 제재 결의 현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선관위 예산 편성은 수년 전부터 경상 회계 예산 원칙으로 편성되나 수입에 따른 발전 기금은 총회 경상예산으로 산입되고, 지출은 여타 상비부와 동일하게 세칙(오랜 관행)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타당한 증가 사유가 있을 시 타 상비부와 동일하게 추경 증액 청원 절차에 따라야 함. 하지만 선관위는 예산을 임의 집행하여 추경 증액 청원 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공금횡령죄에 속하기에 향후 상응한 조치(추경 승인 불이행)을 강구하며 반드시 총회의 제재를 해 달라는 내용
- 선거관리비 예산 상세화 및 회기 구분 없이 일괄적 편성으로 투명한 회계로 탄력조정 현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현행 예산 배정은 당회기(8월 말 기준) 정산과 9월 집행분(약 20일)으로 구분하므로 복잡성과 이중성, 중복성 등의 문제가 있음. 일괄적 편성은 목차별 구분 합산 금액으로 9월로 집행분은 가지급 계정으로 지급하고 총회 후

재무부 일괄정산을 통해 잔여금 이월금 없이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탄력적 조정 / 총회예산서에 선거관리 비용 편성 및 세분화하여 구분 / 세분화 구분 예산 책정 후 과,부족분은 타 상비부와 같이 재정부의 추경을 만드시 받게 해 달라는 내용

바. 상비부 활동 예산 수정 관련

- 21개 상비부의 예산안을 현실화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21개 상비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예산안을 현실화 시켜 원활한 활동을 하게 해 달라는 내용

사. 강사비, 설교비 상향 조정 관련

- 총회 행사 시 설교비를 20만원으로, 특별한 집회(저녁집회, 부흥회 등)의 설교 강사는 100만원으로, 연구비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외부강사를 초청하기에 어려우며 전공자에게 원고료를 주기엔 금액이 적어 어려움이 있으니 설교비, 원고료 등을 상향해 달라는 내용

아. 화상회의 시행 관련

- 기관, 상비부, 상설, 특별위원회, 속회 회의 시 50% 이상 화상회의로 시행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코로나시대에 화상회의는 이미 일상이 되었기에 총회 회의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대폭 절약할 수 있고 총회의 회의비도 절약할 수 있어 총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에 50%이상을 화상회의로 진행시켜 달라는 내용

자. 총회 회의 관련

- 총회 각종 회의의 장소를 필요 시 대전으로 사용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총회의 회의를 대전으로 정하여 사용하되, 장소 선정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해 달라는 내용

차. 상비부 배정 관련

- 재정부는 목사와 장로의 배정을 목사4:장로6으로 배정하되 부장은 장로로 배정하며, 교육부는 장로3인을 지역구도에 따라 각년조에 1인씩 배정하되 장로부원 1인은 회계로 배정하고, 현의부는 목사와 장로의 배정을 목사6:장로4로 배정하되 부장은 목사로 배정하고 회계는 장로로 배정하도록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재정부는 목사4, 장로6으로 배정하되 부장은 장로로 배정하고 교육부는 장로3인을 지역구도에 따라 각년조에 1인씩 배정하되 장로부원 1인은 회계로 배정하고 현의부는 목사6, 장로4로 배정하되 부장은 목사로 배정하며 회계는 장로로 배정해 달라는 내용

카. 상비부 및 상설위 통폐합 관련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와 이슬람대책위원회,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를 '이단 및 사회 위원회'로 통합하며,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를 '교류 및 협력위원회'로 통합하며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상비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특별위원회는 1회만 연장 현의의 건

타. 선거규정 개정 관련

- 선거규정 개정 절차 변경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현행 선거규정은 선거관리위원 1년 보임 상식으로 해마다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기에 선거규정 또한 노회 현의 및 선관위의 청원으로 정치부 경유하여 규칙부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듬해 총회에서 결의하여 신중성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



파. 총회 재단 당연직 관련

- 총회사회복지재단, 유지재단, 은급재단의 당연직(이사장, 상임이사)은 총회장, 총무 외 다른 임원 들은 말지 않도록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종전대로 총회사회복지재단, 유지재단, 은급재단의 당연직은(이사장, 상임이사) 다른 임원이 말지 않고 오직 총회장과 총무가 맡게 하며 이사비는 총회가 대납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정관 혹은 관례에 따라 이사회비를 납부 하며 미납 시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즉각 해임해 달라는 내용

하. 재판국원 선정 관련

- 총회재판국원 선출 시 재판국원 후보 노회에서 재판 건이 현의되어 있다면 해당 노회 총대는 재판국원 불가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재판국원을 선출할 때 후보의 노회에서 재판 건이 현의되어 다루어질 예정이라면 해당 노회의 총 대는 재판국원이 불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a. 총회총무 예우 관련

- 총회총무 임기 종료 후 예우를 증경장로부총회장에 준하게 하며 총회 및 목사장로기도회에 언권 허락 요청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총무를 역임한 자에게 증경장로부총회장과 같은 예우를 하며 총회와 목사장로기도회 시 언권을 허락 해달라는 내용

b. 편목교육 관련

- 편목 특별교육과정 개설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노회 산하 준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편목 교육 과정을 통해 본 교단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내용

c. 지방신학교 관련

- 총회인준지방신학교 계속 유지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본 교단 소속 목사님의 대부분이 지방신학교 출신이므로 본 교단 신학교를 보호 및 육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신학원 수업을 106, 107회 결의대로 진행하며 적극 지원하고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총신, 칼빈, 대신, 광신, 서울신학원, 대전신학원)중 선택하여 대학원과정의 교육 후에 총회 강도사 고시를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d. 위탁교육 관련

- 칼빈, 대신, 광신대학교의 총회 위탁교육 재 실시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인준지방 신학교 위탁교육을 칼빈, 대신, 광신대학교에서 실시하다가 2022년부터 대전신학교, 서울신학교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부산, 경남, 경북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칼빈, 대신, 광신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재 실시해 달라는 내용
- 대신대학교의 총회 위탁교육 재 실시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 인준 지방 신학교 위탁교육을 칼빈, 대신, 광신대학교에서 실시하다가 2022년부터 대전신학교, 서울신학교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부산, 경남, 경북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신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재 실시해 달라는 내용

e. 총회 신학원 관련

- 지방신학교 졸업생 계속교육과정인 총회신학원 존속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6회 총회에서 설립준비위원을 선정하여 2022년 1학기부터 총회신학원을 복원하여 현재 대전신 학원을 통해 수업하고 있는 총회신학원을 보호하여 달라는 내용

f. 목회자 재교육 관련

- 교회 지도자(목사, 장로)에 대한 재교육을 위해 광역 시도에 위치한 지방 신학교 중 각 1개 학교를 재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목사, 장로의 재교육을 위해 광역 시도에 위치한 지방 신학교 중 각 1개 학교를 재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해서 재교육을 진행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고 지방신학교 또한 활성화될 수 있으니 거점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

g. 대표준예배예식서 관련

- 대표준예배예식서 장로 임직시 교인 선서 내용 중 ‘..존경하고 위로하고 순종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를 헌법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변경하며, 권사는 ‘협력하기로’를 삽입하여 수정 헌의의 건

h. 결혼과 출산, 생명 사랑의 교재 발간 관련

- 결혼과 자녀 출산 & 생명 사랑의 교재 발간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다음세대의 기독교 가치관 확립을 위해 결혼과 자녀 출산 그리고 생명 사랑의 교재를 발간해 달라는 내용

i. 강도사고시 관련

- 총회강도사고시 논문, 주해, 설교 제출 시 표절 검사한 후 제출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강도사고시 논문, 주해, 설교, 제출 시 표절검사한 후 검사 결과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

j. GMS 노회 파송이사 관련

- 총회세계선교회 노회파송이사 중 이사회비 미납자의 총회 총대 제한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세계선교회의 노회파송이사 중 이사회비를 미납할 경우 당해년도 총회 총대권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

k. 원로 선교사 관련

- 은퇴/원로 목사로 추대받은 후 자비량으로 선교지에서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원로선교사제도 신설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선교사와 담임목사로 선교에 헌신하던 중 은퇴/원로목사로 추대받은 후 자비량으로 선교지에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원로선교사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

l. 이명 관련

- 목사(위임, 시무, 부목사) 이명 시 연금 3개월 납입증 의무 첨부 시행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목사 이명 시 연금 3개월 납입증을 의무로 첨부하며 3개월 납입증을 첨부한 자에게 이명을 허락하도록 법제화를 해달라는 내용

m. 남북통일 관련

- 2027년 남북통일 준비를 위한 대각성 대회 개최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2027년에 ‘서울세계청년대회’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므로 교단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평양 대부흥 120주년과 종교개혁 510주년을 맞이하므로 대각성대회를 준비하여 개혁신앙의 선도적 역할과 통일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



n. 고향교회 십일조 보내기 관련

- 고향교회 한 달 십일조 현금 보내기 운동 결의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어려운 농촌지역을 돕기 위해 한 달 십일조를 고향으로 보내기 운동을 총회에서 결의해 달라는 내용

7. 총신대학교 관련

가. 총회규칙 개정 관련

-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 1항을 [···위탁한 신학교육을 하며, 총신대의 운영과 관련한 법인정관, 법인이사(개방이사 포함)의 추천 및 제반 사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을 두어 준수하도록 한다. 로 규칙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나. 시행령 제정 관련

-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해 시행령과 부칙을 추가로 제정해 달라는 내용

다. 법인이사회 구성 관련

- 2025년 4월 8일자로 만료되는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에 관해 총회 지시사항을 법인이사회에 통보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한 후 2개월(11월 20일)이내에 총회임원회에 보고 청원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신대 정관 제1장 제5조, 제3장 제20조, 제39조, 총신대 정관 부칙을 개정하고 총신대 법인이사회에서 총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총회지원금 및 제108회 총회에서 결의한 후원금 지급을 3년 동안 보류하고, 법인이사장, 이사 및 총장에 대해 총회의 모든 공직 및 강도권을 3년 동안 보류하고 장로이사는 강단 기도를 포함하여 총회의 모든 공직을 3년 동안 보류하도록 해노회와 해당회에 지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

라. 총신대 교수회 관련

- 총신대 교수회가 총회의 지도를 배척하고 개정한 각 규정을 다시 개정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 청원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신대학교의 정치교수와 전 총장의 책동으로 총신과 총회의 관계를 잘 모르는 임시이사 및 현 이사들이 개정한 총신대학교 규정(교원인사규정 제2장 제8조, 교원신규임용 시행세칙 제3장 11조, 교원신규임용 시행세칙 제2장 제5조, 인사규정 제5장 제30조, 직원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총신대 법인이사회에서 총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총회지원금 및 제108회 총회에서 결의한 후원금 지급을 3년 동안 보류하고, 법인이사장, 이사 및 총장에 대해 총회의 모든 공직 및 강도권을 3년 동안 보류하고 장로이사는 강단 기도를 포함하여 총회의 모든 공직을 3년 동안 보류하도록 해노회와 해당회에 지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

마. 정관 변경 관련

-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변경 할 때까지 관련자 공직 제한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의 사전 인준 전제, 총회가 이사 7인 추천, 법인해산은 사전 총회 인준 등으로 정관변경을 이사회가 결의할 때까지 관련자의 노회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

바. 후원이사회 조직 관련

- 각 노회의 총회총대 중 각 1인을 파송하여 총신대 후원이사회 구성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폐지 한 후 총신 후원이 대폭 줄어들어 미래세대 양성이 약화되고 있기에 각 노회에서 총대 중 1인을 파송하여 이전 운영이사회비 수준으로 후원하며 이사회비는 총회가 관리 감독하여 총신에 직접 후원하도록 청원하는 내용

사. 운영이사회 복원 관련

-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복원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4회 총회에서 폐지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복원해 달라는 내용

아. 교육과정 신설 관련

- 총신대학교 교회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신설 현의의 건
- 교회교육지도사 교육과정을 총신대학교에 원격평생교육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평신도 교사 양성을 위해 교회교육지도사 교육과정을 총신대학교에 평생교육원 및 온라인 교육으로 신설해 달라는 내용

8. 선거 관련

가. 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폐지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폐지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전 총회장을 비롯하여 직전 임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중립성이 훼손 될 수 있기에 당연직을 폐지하고 지역구도로 균등하게 선출해 달라는 내용
-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직을 없애고 선출된 선관위원들 중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하도록 개정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하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논할 때 너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기에 당연직 (직전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을 없애고 총대들 중 선출된 선관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다른 임원을 선출하도록 개정에 달라는 내용

나. 선거 규정 수정 관련

- 선거 규정 수정 요청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4조(조직 및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을 유지한다.-(신설) / 제9조 6.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를 [2회 이상 출마자에게는 출마할 때마다 발전기금의 20%씩 가산한다.(109회기 부터)]-(수정) / 제15조 8. 총무, 기관장, 공천위원장은 위 7항에서 총회 임원에 준하며, 당회기에 임기만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를 [당회기에 임기만료 예정인 경우, 총무와 기독신문사 사장이 연임한 경우 해 노회는 예외로 한다.]-(수정) / 제20조 2. 입후보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사퇴 및 심의 탈락,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를 [사퇴,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수정) / 제21조 1. 등록 기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자격 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로 확정한다. 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10일 후에는 후보자로 확정된다.]-(수정) / 제26조 1. 총신운영이사장-(삭제) / 제28조 4. 후보자는 총회 1년 전부터 총회 총대를 부흥회, 집회, 등에 강사로 초청할 수 없다-(수정) 5.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삭제) 6. ~혹은 일반 모임(사석 포함-(삭제)) 제29조 4.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선출직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삭제)

9. 신학 관련

가. 김미진 씨 관련

- NCMN 김미진 씨의 저서 <왕의재정>과 재정강의 이단성 연구조사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왕의재정>의 강의를 심취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직통계시를 받아야 하며 환상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NCMN에 소속되어야만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왕의재정>과 재정강의에 대한 이단성을 연구조사 해달라는 내용

나. 나현숙 씨 관련

- 전주 성은세계선교교회 나현숙 씨의 이단성 신학조사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 천국이 7층천에 있음 2) 새로운 세마포를 입어야 함 3) 천국에 집 한 채는 1500층이 가장 높음



4) 2012년 10월 영상에서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여섯째 인봉이 떼어졌는데 2022년 8월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고 주장하는 나현숙 씨에 대한 이단성을 연구조사 해달라는 내용

다. 정동수 씨 관련

-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 이단 규정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킹제임스성경 외에 성경들에 대해 '마귀'등 극렬한 표현을 반복하며 개혁개정성경을 상습적으로 비방하는 정동수 씨를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는 내용

라. 김현두 씨 관련

- 신생교단을 만든 김현두 씨, 고희인 씨 이단적 사상 주장에 대한 총회이단대책위원회의 조사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부친노회를 탈퇴하여 '합동성경총회'를 급조하여 총회장이 되었으며, 합동 측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비성경적 해석, 직통계시 등을 주장하는 김현두 씨에 대해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

마. 능동적 순종, 회심준비론 관련

- 능동적 순종과 회심준비론에 관해 제108회 총회에 보고한 제107회기 신학부의 보고에 쟁점이 여전한 사항이므로 더 정확하게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다시 보고 요청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7회 총회에 신학부가 보고한 내용 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생애 전체의 순종의 절정이며 십자가의 속량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와 '그리스도의 순종교리에서 능동적 순종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오해 없이 바르게 사용된다면 명백한 개혁주의 전통의 교리이다.'는 완전 상충되기에 십자가의 속량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능동적 순종교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배척해야 하는지 총회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내용.또한 제107회 총회에서 교류금지한 회심준비론과 동떨어진 '따라서 회심을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전개하는 회심을 일컬어 '회심준비론'이라 할 때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수납 될 수 있다'는 의견은 제107회 총회와 동떨어진 이야기 이므로 신학부에서 더 정확히 연구해 달라는 내용
- 제107회 총회에서 회심준비론(준비교리)으로 교류금지된 정성우, 이동훈 씨의 교류금지 사실 재확인 요청 및 더 강도 있는 제재조치 요청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7회 총회에서 교류 금지한 회심준비론 (정성우, 이동훈 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며, 회심준비론 사상이 도르트총회를 통해 사형, 재산 몰수되었던 말미미안 이단 사상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며 더 강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

바. 로잔대회 관련

- 로잔대회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 확인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시작 할 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기도하는 세계적 연합 운동을 표방하였으나 2024년 서울에서 열리는 로잔대회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기독교적인 사회윤리 운동으로 변질되어 동성애를 죄로 선언하지 못하고 문화의 다양성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현 시점에 여러 교회와 목사들이 로잔대회에 참여하고 있기에 로잔대회에 대한 총회의 입장과 본 총회에 속한 교회와 목사가 로잔대회에 참석해도 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

사. 성경 용어 관련

- 성경에 쓰여 있는 고유명사(지명, 호칭 등)를 현재 사용하는 명사로 수정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성경의 고유명사를 국제적으로 표기되는 것과 동일하게 변경해 달라는 내용 (예: 바사-페르시아, 바로-파라로, 애굽-이집트, 블레셋-팔레스타인 등등)

아. 사도신경 관련

-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변경 사용 청원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사도신경에 비문법적인 표현과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기에 대다수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새번역 사

도신경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

자. 발달장애인 세례 관련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세례지침 마련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가능 여부와 총회차원의 시행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

10. 노회 관련

가. 노회 통폐합 관련

-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회통폐합을 추진하고 분립원칙 및 지역경계원칙을 세우도록 해 달라는 내용

나. 노회 복귀 관련

-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 없이 노회 복귀(재가입) 및 변경 불허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지교회가 노회에 가입, 복귀(재가입), 변경 등은 반드시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당회장, 노회, 총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해 달라는 내용

다. 교회 행정 관련

- 구미노회 경내에 위치한 구미강동, 인동교회를 총회결의대로 지역 경내인 구미노회로 귀속 헌의의 건
- 경동노회 독도교회와 동일주소인 울릉양문교회 교회등록 요청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경동노회에 소속이었던 독도교회에 대한 법원판결문, 교회법인등기부 등본, 경동노회 협약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총회에 교회등록신청을 요청한 남평양노회 울릉양문교회의 설립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

라. 은퇴준비위원회 조직 관련

- 목회자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노회별로 은퇴준비위원회 조직 및 실행 권고 헌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목회자는 은퇴 후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 노회에서 은퇴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노회의 형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해달라는 내용

11. 질의 관련

가. 노회 재판국원 자격 관련

- 권징조례 제117조(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 할 수 있으니..)에서 시무목사가 노회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3회 결의 중 [시무목사,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라고 결의한 것은 '개교회에서 재판권이 없다'라고 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청빙 받은 시무목사는 '노회에서'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시무목사 당회장권 관련

- 시무 계속 청원서를 제출하여 노회 허락으로 3년간 시무 연장 승낙 받은 시무 목사는 노회 결의로 받은 당회장권이 3년 동안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의
(세부내용 및 취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가 노회의 허락으로 3년간 시무 허락을 받았을 때 노회의 결의로 받은 당회장권이 1년이 아닌 3년간 주어지는게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다. 은퇴목사 계속 목회 관련

- 정년 지난 목사가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계속 시무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 마련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8회에 결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노회 지침에 대한 질의

라. 목사사모 선서 관련

- 목사 위임식 때 목사 사모가 위임받은 목사 곁에서 함께 선서하는 것에 대한 질의 (세부내용 및 취지) 목사 위임식 때 목사 사모가 목사 곁에서 함께 선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12. 대사회 관련

가. 차별금지법 관련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결의안 채택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결의안 채택하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여달라는 내용

13. 조사 처리 관련

가. 총회 감사부 관련

- 총회 감사부 특별감사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 산하 모든 기관들의 감사의 직무를 맡은 감사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증거가 있음. 또한 임원이 아니면서 임원회에 참석하는 자가 있기에 특별감사로 조사 처리해 달라는 내용

나. 제108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제108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의 불법 조사 처리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 선관위 위원장과 서기의 직권남용으로 헌법 질서 파괴 2) 공정성 위반 3) 선거규정을 투표로 결정하여 공표하게 한 불법 4) 특정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 질서를 해친 불법 5) 선거규정에 명시된 의결정족수 위반 6) 선관위 투표 자료에 대한 증거물 인멸 7) 총회의 권한을 침탈한 불법 사항을 전국교회에 공표하여 헌법 질서 훼손 위 7가지 죄상으로 제108회에 큰 타격이 되며 제108회 총회장과 임원회 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므로 헌법 질서와 회복, 평안을 위해 조사처리해 달라는 내용

다. 제107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제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회계 집행에 대하여 조사 처리 및 변상조치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기독교신문 5월7일자에 보도된 제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회계 집행에 대하여 변상 및 조사 처리해 달라는 내용
- 제107회기 선관위 심의분과장이 서기, 회계업무 월권 집행으로 배임 및 직무유기 초래 및 무분별 집행 건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징계처리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분과 위원장이 선관위 회계 집행정산을 월권하여 대항함으로써 본연의 업무 배임 및 직무유기로 인한 무분별 집행을 하였으므로 특별감사 실시 및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

라. 서울북노회 관련

- 서울북노회의 해충회 조사 처리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 개인이 총대들의 결정에 순복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하여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총회 선거규정 제4장 제18조 5번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민형사 제소(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때 자동 입후보자 상실 및 향후 10년간 총대권 제한에 대해 이의 없음을 서약'함에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나 서울북노회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음 2) 서울북노회가 제108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에 대해 불법 조사 처리 청원으로 공무집

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였기에 교단의 분열을 조장하는 서울북노회를 조사 처리해 달라는 내용

마. 사실 언론 관련

- 교회 분쟁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실 뉴스 매체 조사 처리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각 노회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 이권을 노리고 개입하여 분쟁을 부추기는 사실 언론을 조사하여 널리 알려달라는 내용

14. 세례교인 헌금 및 상회비 관련

가. 세례교인 헌금 모금 관련

- 세례교인 헌금 모금을 노회가 모금하도록 하며, 참여도가 높은 노회에게 차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상 수상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세례교인 헌금을 노회가 모금하여 참여도를 심하하여 총 납입액 20%를 노회발전기금으로 시상하며, 총무는 참여도 1-3위에 해당하는 노회에 대해서 차기총회에 총회장상을 수여하도록 한다.

나. 금지 조정

- 광서노회 금지 하향 조정 청원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광서노회는 구)서광주노회와 구)광주동부노회가 합병되었지만 합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구)서광주노회 소속 교회들이 소수 합병되어 구)광주동부노회 소속교회들이 대부분인데 금지가 3급지로 상향되어 곤란을 겪고 있어 대부분 농어촌교회이므로 구)광주동부노회의 금지였던 5급지로 조정해달라는 내용

15. 재정청원

가. 재난 기금 관련

- 매년 구제부 재난 특별기금(5억 원) 조성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제 특별기금으로 매년 5억 원을 예치하여 달라는 내용

나. 교육부 및 학생지도부

- 총회 교육부 및 학생지도부의 총회예산을 30%증액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현재 총회의 예산으로는 행사의 50%밖에 충당할 수 없으니 총회예산을 30%증액해 달라는 내용

다. 은급재단 관련

- 은급재단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미가입 목회자에 대한 노회 차원에서 가입 독려 및 매년 총회 발전 기금의 10%와 세례교인 헌금 20%를 은급재단에 지원 현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은급재단의 안정화를 위해 미가입 목회자는 노회 차원에서 가입을 독려하며 매년 발전 기금의 10%를 지원하고 세례교인 헌금의 20%를 은급재단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

라. 대신대학교

-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2억 원) 청원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사학진흥재단의 평가를 위해 재정지원(2억 원)을 청원함

마. 대전신학교

- 대전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 원) 청원의 건



바. 부산신학교

- 부산신학교 재정 지원(3천만 원) 청원의 건

사. 수원신학원

- 수원신학원 재정 지원(2천만 원) 청원의 건

아. 인천신학교

- 인천신학교 재정 지원(2천만 원) 청원의 건

자. 전북신학교

- 전북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 원) 청원의 건
- 전북신학교 재정 지원(3천만 원) 청원의 건

차. 총회 산하 인준신학교 및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 관련

- 총회산하 인준 신학교(칼빈, 대신, 광신)에 각각 3억 원,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서울, 인천, 수원, 대전, 청주, 부산, 전북, 광주신학교)에 각각 5천만 원 (합계 13억 원)재정 청원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108회에 총신대학교만 10억을 지원 결의를 하였는데 총회 산하 지방신학교 3곳과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 8곳에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

카. 총회신학원

- 총회신학원 재정 지원(3천만 원) 청원의 건

타. 노회

- 제주노회 재정 지원(1천만 원) 청원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미래자립교회에 생활비와 예배당 임대료 등 재정의 열악함이 있기에 재정을 청원하는 내용

파. 기타

- 38만 농인을 위한 수어성경번역 사업 재정 지원(2천만 원) 청원의 건
- 한센인 IDEA 선교를 위한 재정 지원(3천만 원) 청원의 건
- 구미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재정 지원(2억 원) 청원의 건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재정 지원(3천만 원) 청원의 건
- 두무진교회 토마스선교사 선교기념관 건립 재정 지원(3억 원) 청원의 건
- 아이티오나빌기독교학교 재정청원(5천 6백만 원) 청원의 건
-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재정 지원(1천만 원) 청원의 건
- 소록도교회 100주년 기념관 건축비 (3억 4천만 원) 청원 건
- 삼가교회 건축을 위한 재정 지원(5천만 원) 청원의 건
- 창조과학전시관 재정지원(5백만 원) 청원의 건
- 캄보디아 사랑의집 재정지원(2천만 원) 청원의 건
- 약목평안교회 교회수리비 재정 지원(1천만 원) 청원의 건
- 성산교회 교회수리비 재정 지원(1천만 원) 청원의 건
- 신천지의 성지화 저지를 위한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 지원(1억 원) 청원의 건
- 김제사회복지관 사업 운영 경비를 위한 재정 지원(1천만 원) 청원의 건